

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3일
신 청 인	성명/명칭	생년월일
	주소	연락처
비행장치	종류/형식	용도
	제작사	제작번호
	소유자	(전화:)
	신고번호	안전성인증서번호 (유효기간 만료일) (. .)
비행계획	일시 또는 기간(최대 12개월)	구역
	비행목적/방식	보험 [] 가입 [] 미가입
	경로/고도	
조 종 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연락처
	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	
동 승 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탑재장치	무선전화송수신기	
	2차감시레이더용트랜스폰더	

「항공안전법」 제1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항공청장·국방부장관(각급 부대의 장)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귀하

작 성 방 법

- 「항공안전법 시행령」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30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비행장치란 중 신고번호 또는 안전성인증서번호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.
-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이거나 무인비행장치인 경우에는 동승자란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.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